「국제법무」 제10집 제2호, 2018. 11.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이전 재산불법의 해결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and the Legislation on the Resolution of Property Illegal in the Previous Communist System

표 명 환**
Pyo, Myoung-Hwan

목 차

Ⅰ. 서론
Ⅱ. 헌법개정과 체제전환
Ⅲ. 이전 체제의 재산불법에 대한 해결 법제
Ⅳ. 결론: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국문초록

헝가리는 1989년 구 소련연방의 해체로부터 시작된 동구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국 중의 하나이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유혈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것이었다. 헝가리의 개정 헌법은 주권의 주체로서

논문접수일 : 2018. 09. 30.
심사완료일 : 2018. 11. 01.
게재확정일 : 2018. 11. 01.

* 이 논문은,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재산불법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원칙'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석종현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에 수록된 "헝가리의 공산주의 불법수용에 관한 보상법제 고찰"(표명환,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천봉석종현화갑기념논문집 편찬위원회, 2003, 1709쪽 이하)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 법학박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과 자유민주질서, 법치주의원칙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등의 서구 자유국가헌법을 모방하였다. 특히 헌법에 근거한 선거법 제정은 이전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자유국가질서가 형성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체제전환을 완성한 헝가리는 이전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문제의 해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불법의 해결은 개정 헌법에 따른 것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 중의 과제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전 체제의 불법 중에서 재산 불법의 문제는 과거의 소유자 규명에서 출발한다. 이와 더불어 이 문제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미래의 소유자가 누가될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국유재산의 탈국가화과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헝가리는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에 관하여 헝가리 의회는 제1차 보상법률과 제2차 보상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보상에 관하여 '금전'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증서'를 규정하였다.

헝가리의 이러한 해결방법은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직면하게 될 북한지역에서의 공산주의 재산불법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독일이 채택한 원물에 의한 반환원칙에 관한 많은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재정상황 및 북한지역에서의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의 관점에서 보면, 헝가리의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의 방법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헝가리의 체제전환, 보상원칙, 보상증서, 반환원칙, 재산불법, 보상법률, 한반도통일

Ⅰ. 서론

한반도 통일 이후 이전 북한지역에서 야기된 재산불법의 해결에 관한 문제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과제이다. 북한지역에서

의 공산정권의 수립과정에서의 재산불법은 소련점령하의 토지개혁(1946.3)과 중요산업의 국유화(1946.8.10.) 그리고 북한정권수립(1948.9.9.) 이후부터 시작하여 1972년까지 행해진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사회화조치로 구분될 수 있다.[1] 한반도 통일 이후 이러한 재산불법의 문제를 각각 분리하여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전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있어서 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조치와 이후 동독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몰수조치를 구분하여 해결하였던 것이 그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2]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 또한 이미 재산불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경험한 통일독일 및 동구유럽 여러 국가의 방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통일독일의 경우, 원소유자에 대하여 '원물을 통한 반환원칙'을 채택하였고, 이후 야기된 투자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 금전 등을 통한 보상원칙을 가미한 소위 '복합모델'을 채택하였다.[3] 통일 독일의 해결방법은 동구 유럽의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국가가 이 모델을 채택하였다.[4] 이와 달리 체제전환국인 헝가리는 국가의 열악한 재정사정과 국가경제의 재건 및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보상증서를 통한 보상방법'을 모델로 채택하였다.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 통일 독일의 '원물에 의한 반환원칙'의 채택여부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헝가리공화국의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아니하다.

이에 본고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의 문제를 해결

1)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389쪽.
2) 이에 관하여는, 표명환,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법리, 한국헌법학회 제130회 관·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19쪽 이하 참조.
3) 이에 관하여, 김병기, 통독 재산법제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청구권, 토지공법연구 제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2., 183쪽 이하 참조.
4) 이에 관하여, 법무부 편,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1996, 59쪽 이하 참조.

하기 위한 최선의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제전환국인 헝가리의 이전 체제의 재산불법의 해결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고는 헝가리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검토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체제전환 이후 재산불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제1차 보상법률 및 제2차 보상법률을 검토한다. 헝가리의 재산불법문제의 해결에 대한 원칙규정은 제1차 보상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결의 원칙규정에 해당하는 제1차 보상법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1차 보상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차 보상법률의 내용을 검토한다.

Ⅱ. 헌법개정과 체제전환

1. 체제전환의 과정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새로운 헌법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면적인 헌법의 개정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헝가리의 헌법개정은 1988년 5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die ungarische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의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진개혁파인 그로스(karoly Grosz)을 당서기장으로 선출한 것이 그 출발점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임시전당대회는 당시의 카다르시대(Kádár-Ära)의 종언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였으며, 사회주의 노동당내부의 자유로운 개혁추진세력의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후 개혁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노동당은 1989년 3월 정부의 헌법초안을 승인하여, 법률 제31호로써 전면적인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5)]

개정된 헌법에 따라 요구된 헌법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법률 제32호가 제정되었고, 선거에 관한 법률 제34호가 제정되었다. 선거법의 제정은 특히 공산당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0년 3월과 4월에 자유로운 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의 결과, 헝가리 민주포럼(Ungarisches Demokratisches

5) Hiller, Neue Verfassung für Ungarn, ROW 2/1998, S. 75.

Forum)과 자유민주주의자 연대(Bund Freier Demokraten)가 각각 42·49%와 24·09%를 득표하였는데 반해, 헝가리 사회주의 당(Ungarische Sozialistische Partei)이 8·55%를 득표한 것에 그쳐,[6] 자유민주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7] 이러한 선거 결과는 그 동안 헝가리를 지배하여 왔던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안탈(J. Antall)은 우 중도파를 중심으로 연합정부를 구성하였고, 그의 사후인 1993년 보로스(P. Boross)의 연합정부는 4년 임기제를 성취하고, 아울러 계속적인 타 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통하여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완성하였다.[8]

이처럼 헝가리공화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통하여 체제전환을 완성하였다.

2. 개정 신헌법의 주요 내용

개정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헝가리 공화국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다"라고 하여, 종전 헌법상의 인민공화국을 공화국으로 대체하고 서구의 헌법모델을 모방하여 자유민주적질서와 법치국가의 원칙을 구현하였다.[9]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국민주권을 그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하여, 국가권력의 원천 및 주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주권의 실현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에 명문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한다'라고 하여, 대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권력작용의 한계로서 기본권을 규정하였고, 개별기본권으로서 자유민주적 법치

6) Takács, Das Prinzip des Parlamentarismus in der Theorie und Verfassungswirklichkeit Ungarns, in: Brunner (Hrsg.), Politischer Pluralismus und Verfassungsstaat in Deutschland und Ungarn, Südosteuropa-Studie 49, München 1991, S. 89.

7) Brunner, Gerog/Schimd, Karin/Klaus, Westen(Hrsg.), Wirtschaftsrecht der osteurpaischen Staaten, Loseblattsammlung, Baden-Baden 1991, S. 3.

8) Takács, aaO., S. 92.

9) Hiller, aaO., S. 74.

국가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보장과 수용에 관한 보상의무(제13조) 및 상속권 보장(제14조)을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본질적 내용침해의 금지를 통하여 보장되는 자유적 기본권(제54조-제65조)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규정하였다.(제70/K조). 또한 개정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일반원칙을 제9조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공적재산과 사적 재산의 동등한 권리성 및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허용하였다.

3. 자유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

헝가리의 개정 헌법 제9조 제1항은 "헝가리의 경제는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의 동등한 권리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동등한 보장을 향유하는 시장경제이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는 "헝가리 공화국은 기업의 권리와 경제경쟁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촉진한다"라고 하여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시장경제질서와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제70/B조 제1항에서 "노동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여 노동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헝가리는 종래의 사회주의경제질서를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질서로의 경제질서의 대전환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는 헝가리의 경제헌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헝가리가 종래의 체제하에서와 달리 사유재산제도 및 사유재산권의 보장, 개인의 창의에 입각한 사적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질서와 더불어 재산권을 헌법상 보장한다는 것은, 종래의 체제에서와 달리 개인의 사유재산의 형성을 인정하며, 또한 생산수단에 관한 사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은 국가에 의하여 조정되고 관리되어오거나 지배되어진 기업과 집단화된 경제체제의 종국적인 전환을 정당화하는 지침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개정 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내국의 자연인과 법인 외에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직접 표현하고 있지 않아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초안자들의 의도가 국제적인 경제관계에서 큰 의미가 있는 시장경제를 헌법의 경제

질서의 원리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9조의 보호영역은 헌법적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내국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결되었고,[10] 이러한 해석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자본 또한 보호되는 것으로 하였다.[11]

4. 헌법개정에 따른 이전 체제의 불법문제의 해결과제

전면적인 헌법개정에 따른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이전 체제하에서의 반법치국가적 불법의 청산에 대한 해결 과제를 수반한다. 헌법개정을 통한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이전 체제의 반법치주의적 행위의 청산 없이는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전 체제하에서의 반법치주의적 불법의 청산 중에서 특히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보상없이 자행된 수용에 대한 해결은 체제전환 이후의 헝가리의 경제질서 확립 및 경제재건 등을 위하여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의 과제로서 대두되었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자행된 보상없는 수용에 대한 해결은 이전 체제하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유화(Privatisierung)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들 양자간의 관계 정립은 보상없는 수용재산의 해결 및 경제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이들 중 이전 체제에서의 보상없는 수용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사유화라 관계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 해결하느냐의 문제는 보상없는 수용재산에 대한 보상방법 및 원칙의 채택과도 관련된다.

헝가리는 '원소유자 규명 이후 사유화'라는 기본적 사고에 기초한 독일이나 체코공화국과 달리 양자를 분리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헝가리는

10) Rother, Entwicklungsstendenzen im ungarischen Wirtschafts- und Privatisierungsrecht, ROW 1992, S. 203-204.

11) Vörös, Das Recht auf Eigentum in der ungarischen Verfassung, in: Morsey/ Quaritsch /Siedentopf (Hrsg.), Staat, Politik, Verwaltung in Europa, Gedächtnisschrift für Schnur, Berlin 1997, S. 250-251.

보상없는 수용재산에 대한 원소유자 규명의 문제와 국유재산의 사유화의 문제를 각각 분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헝가리는 보상없는 수용재산에 대하여 원물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한 원칙은 제1차 보상법률 및 제2차 보상법률 등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Ⅲ. 이전 체제의 재산불법에 대한 해결 법제

1. 재산불법의 유형

헝가리는 동구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점령하에 소련헌법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헝가리의 1949년 헌법 제4조 제2항 2문은 "국민은 점차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추방하고 종국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구축한다"라고 하여, 사회주의경제질서를 국가의 경제질서로서 표방하였다. 이러한 국가경제질서에 따라 사회주의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조치로써광범위한 토지개혁(Bodenreform)이 단행되었다. 이 토지개혁은 1945년 법률 제7호(Gesetz Nr. VI/1945)을 통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된 "1945년 3월 15일의 대토지소유체제의 폐지와 농민에 대한 토지할당에 관한 규정(Die Verordnung über die Abschaffung des Systems des Großgrundbesitzes und die Bodenzuweisung an die landwirtschaftliche Bevölkerung vom 15. März 1945)"에 의하여 자행되었다.[12] 그리고 또한 토지개혁을 통한 협동농장(Genossenschaft)의 건설을 위하여, "1945년 12월 14일 협동농장에 관한 농장관리자 규정(Die Verordnung des Landwirtschaftsministers über die Genossenschaften von 14. 12. 1945)"이 마련되었다. 이후 1958년 적극적인 재집단화정책 등의 일련의 조치가 자행되었고,[13] 1961년에 이르러 농업협동조합(landwirtschaftliche

12) Gumpel, Sozialistische Wirtschaftssysteme. Die sozialistischen Staaten, Bd. 1, München 1983, S. 34.

13) Donáth, Probleme und Ergebnisse eines schnellen Strukturwandels in der ungarischen Landwirtschaft (1949-1970), Osteuropa-Wirtschaft 1974, S. 3.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이 농업부문을 거의 지배하게 되었다.

기업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국유화조치는 1946년 국가가 50%이상 참여하고 있는 혼합기업(gemischte Unternehmen)과 나아가 전적으로 국가의 소유에 있는 기업의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라 자행되었으며,[14] 1947년 법률 제30호에 의하여 거대 은행과 그 방계기업 및 기타 지분이 국유화 되었다. 또한 사기업은 1948년 3월 28일 정부규정 제3500호에 의하여 국유화조치의 준비단계를 의미하는 경영지배인(Betriebsleiter)제도가 도입되어, 1948년 법률 제25호를 통하여 100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기업이 국유화되었다. 이후 1948년 법률 제37호에 의하여 헝가리 사회주의 기업의 형태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1948년 11월 정부규정 10790호에 의하여 헝가리 국가 석탄주식회사가 해체되었다. 그 결과 산업과 대부분의 농업을 제외한 주요한 경제분야는 국유기업의 형태가 대부분이 되었고, 단지 소매상점(Einzelhandelsgeschäft)과 숙식업(Gaststätten)은 최고 3인으로 구성된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건설을 위한 국유화조치는 1949년 헌법제정을 통하여 추인되었다.[15]

2. 재산불법의 해결의 원칙

이전 체제의 불법수용재산에 대하여 헝가리 의회는 원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16]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의회의 소작농당(Kleinlandwirtepartei)만이 1945년 및 1946년 토지개혁과 강제집단화에 의하여 수용된 '농경지로 사용되어지는 토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물로써 반환

14) Sárközy, Rechtsstellung der Unternehmen in Ungarn, JOR XXVII(1986), S. 76.

15)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을 위한 국유화조치에 대하여 동독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후 헌법제정을 통하여 사후적 추인되었다(김상용, 구동독의 토지제도,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9-10, 122쪽).

16) Brunner/Halmai, Die juristische Bewältigung des kommunistischen Unrechts in Ungarn, in: Brunner (Hrsg.), Die juristische Bewältigung des kommunistischen Unrechts in Deutschland und Osteuropa, Berlin 1995, S. 35.

할 것을 주장하였다.[17] 이에 수상(Ministerpräsident)은 그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이에 관한 헌법해석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소작농당에 의하여 주장되어진 수용재산에 관한 예외적 원물반환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하였다.[18] 즉 헌법재판소는 불법수용재산의 해결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반환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상이라는 상반된 해결원칙은 헌법적합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헌법적인 정당성을 도출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9]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1991년 4월 제1차 보상법률(das erste Entschädigungsgesetz)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20] 그러나 제1차 보상법률은 대통령의 예방적 규범통제(die präventive Normkontrolle)의 한 방편인 거부권행사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으로써,[21] 1991년 6월 마침내 제1차 보상법률(Gesetz Nr. XXV/1991 zur Regel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und über die teilweise Entschädigung für Schäden, die dem Eigentum von Staatsbürgern durch den Staat ungerechterweise zugefügt worden sind.)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제1차 보상법률은 1949년부터 1987년까지에 행해진 자연인소유재산의 불법적 수용에 관한 보상만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제1차보상법률의 보상의 범위를 단지 1949년 8월 이후의 수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22]

이에 따라 헝가리 의회는 1992년 3월 '1939년 5월1일부터 1949년 6월 8일까지 공포된 법규의 적용에 따라 불법적으로 야기된 손해를 범위로 하여 이에 관한 부분적인 보상을 규정'한 제2차 보상법률(Gesetz Nr. XXIV/1992 zur

17) Brunner/Halmai, S. 35.

18) Brunner, Georg/Sólyom, László,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Ungarn. Analysen und Entscheidungssammlung 1990-1993, Baden-Baden 1995. S. 126 f.

19) Brunner/ Sólyom, aaO., S. 126.

20) Brunner/Sólyom, aaO., S. 32.

21) 보상법률에 관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대하여,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보상의무를 새로운 법적 기초에 의할 수 있고, 아울러 그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Brunner/Sólyom, aaO., S. 192 f.).

22) Brunner/Sólyom, aaO., S. 192 f.

Regel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und über die teilweise Entschädigung von Schäden, die der Staat dem Eigentum von Staatsbürgern unter Anwendung von in der Zeit zwischen dem 1. Mai 1939 und dem 8. Juni 1949 erlassenen Rechtsvorschriften ungerechterweise zugefügt hat.)을 의결하였다.

이와 달리 헝가리 의회는 교회 및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원물에 의한 반환원칙'을 결정하였다. 즉 의회는 초기 교회나 교회재단에 귀속되어진 재산이나 국왕의 공식적인 보호권(Patronatsrecht)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교회에 양도되어진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불법수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원물에 의한 반환원칙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반환원칙이 적용되는 이들 재산은 헝가리의 법적 이성에 따르면, 사적 권리주체의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공법상의 법인의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전 체제에 의한 불법수용에 대한 원소유자의 규명과 관련된 문제로 보지 않는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규율하고 있는 "이전 교회의 부동산의 재산상태의 해결에 관한 1991년 법률 제32호(Gesetz Nr. XXXII/1991 über die Regelung der Eigentumslage der ehemals kirchlichen Immobilien)"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24] 이후 이 법률은 폐지되었다.

3. 재산불법의 해결법률: 보상법률

가. 보상법률의 체계

이전 체제의 불법수용에 대하여 보상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구체화하고 있는 보상법제는 제1차 보상법률과 제2차 보상법률로 대별된다. 제1차 보상법률은 "의회는 소유권관계 확립 및 시장경제질서 형성에 필요한 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국민소유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적으로 야기한 손해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법치국가원리, 정의 및 국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고

23) Walter, Das Verhältnis zwischen Staat und Kirche in Ungarn, Osteuropa-Recht 1999, S. 241 f.

24) Brunner/Sólyom, aaO., S. 421 f.

하여 제정목적 및 취지를 첫머리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제1차 보상법률은 1991년 법률 제25호로 공포되었으며, "국민소유권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적으로 야기한 손해의 부분 보상에 관한 법률"(Gesetz Nr. XXV/1991 zur Regelung der Eigentumsverhältnisse und über die teilweise Entschädigung für Schäden, die dem Eigentum von Staatsbürgern durch den Staat ungerechterweise zugefügt worden sind)을 법제명으로 하고 있다.

제1차 보상법률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그 보상의 범위를 1949년 8월 이후의 수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한에서는 위헌이라고 한 판시에 따라서, 헝가리 의회는 그 보상범위를 1949년 8월 이전으로 하는 제2차 보상법률을 제정하였다. 제2차 보상법률은 제1차 보상법률을 원칙규정(die Grundsatzregelung)으로 하고, 그 보상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1차 보상법률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법률의 체계에 따라 이하에서는 그 원칙규정인 제1차 보상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25] 제2차 보상법률에서는 제1차 보상법률과 다른 내용만을 검토한다.

나. 보상법률의 적용범위

헝가리의 체제전환 이전의 재산불법에 대한 보상법률은 제정 당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인 헝가리정부수립 이전의 불법도 정부수립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보상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제1차 보상법률은 제1조에서 "보상은 …사유재산을 침해 당한 자연인에 게 행해진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보상권자에 대하여, "헝가리 국민, 헝가리 국민이었던 자, 헝가리 시민권 박탈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던 자"라고 하여, 자연인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였다. 즉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하여 보상법률에 따른 보상의 산정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불법적 수용에 대한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보상법률 제1조 제2항은

25) 이하의 보상법률의 내용은,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유럽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973쪽 이하의 번역문을 토대로 하여 작성함.

“본법에 근거한 보상은 1949년 6월 8일 이후에 제정되어 부속서 2에 열거되어 있는 법규에 의하여 재산을 침해당한 제2조에서 정하는 자연인에게 행해진다”라고 하여, 1949년 6월 8일 이후의 불법수용만을 보상의 범위로 하고, 제3항에서 “1939년 5월 1일과 1949년 6월 8일 사이에 제정되고 부속서 1에 열거되어 있는 법규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는 본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1991년 11월 30일까지 제정될 별도의 법규정에 의하여 보상된다”고 하여, 1949년 6월 8일 이전의 불법수용에 대하여는 늦어도 1991년 11월 30일까지 법률을 제정한다는 규정만을 둔 채, 제1차 보상법률의 적용시기에 대한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보상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헝가리 의회의 제1차 보상법률에서 내포되어있는 의도는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취해진 수용’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고 오직 헝가리의 사회주의헌법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용된 재산에 관하여만 보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6]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1992년 4월 7일에 이르러, 1939년부터 1948년 사이의 법률에 의하여 행해진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보상법률로서 제2차 보상법이 제정되었다. 제2차 보상법률은 제1차 보상법률 제1조 제3항에 따른 1939년 이후 Horthy 시대에 추방된 유대인과 1946년에서 1948년까지 헝가리에서 추방된 독일 소수민과 1945년 이후의 토지개혁을 통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원칙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된 것이다.[27]

다.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법의 원칙규정인 제1차 보상법률 제2조 제1항은, 보상권자로서 “헝가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시점에 헝가리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 헝가리 국적의 박탈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 1990년 12월 31일 현재 그의 주된 주소가 헝가리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6) 1939년부터 1949년 동안의 수용조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소련점령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1949년부터 1987년 동안의 몰수조치는 헝가리 공산주의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통일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서의 불법수용조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7) Brunner/Halmai, aaO., S. 37.

그리고 제2조 제5항에서 "국제조약에 의하여 이미 보상청구를 행사하였던 자에게는 보상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미 그 보상청구권을 행사한 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제1차 보상법은 보상청구권자로서 원보상청구권자의 권리승계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3항에서 원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지위를 우선 그 직계비속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계비속이 다수인 경우 원보상청구권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액은 동등하게 그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만약 원보상청구권자의 직계비속이 후손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차 보상법률은 제2조 제4항에서, 원보상청구권자가 직계비속없이 사망한 경우, 원소유자의 사망시 및 손해발생시 그와 동거하였던 생존 배우자가 보상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손해 및 보상액의 확정

(1) 손해액의 산정

불법수용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1차 보상법률은 제3조에서 "손해액은 총액으로 산정한다"고 하여(제1항), 재산상의 손해의 산정은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제전환 이전의 불법수용재산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르는 총액(Pauschal)으로 산정하다. 우선 주택, 상점, 작업장과 중심지역의 나대지(ungebautes Grundstück)를 한 그룹으로 묶어 이에 대한 손해산정의 기준을 평수(Grundfläche)로 하고, 기업을 또 한 그룹으로 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농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이에 대한 손해산정의 기준을 농지가치, 즉 토지세의 부가기준이 되는 농지의 순수익(Goldkrone)으로 하여 재산상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손해액은 부속서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첫 번째 그룹의 총액가치는 그 대상물의 상황에 따라(수도인 부다페스트에 있는 대상물의 경우에는 현재의 임대가격에 따라) 1평방미터당 200에서 2000포린트(Forint)의 가치를 총액가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총액가치는 장기근속의 종업원수에 따라 100-200명까지는 5만 포린트로 하고, 100명 단위의 종

업원수의 초과에 따라 1만포린트를 총액가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과거의 불법수용재산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룹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적 산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그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상청구권자는 자신의 손해산정을 어디에 포함시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제1항은 세 번째 그룹으로서 농지에 관한 재산상의 손해액의 총액가치는 l Goldkorne에 1000Forint로 산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2항은 만약 원소유자가 이미 대체토지(Ersatzgrundstück)을 받았다면, 손해액은 그 두 토지의 차액으로 나타나는 농지가치(Goldkronewerte)를 근거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상액

보상액에 관하여, 제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보상액은 제3조에 따라 산정하여, 1,000포린트 단위로 반올림한 손해액을 제2항의 보상액 산정표에 따라 산출한다고 하여(제1항), 0에서 200,000포린트의 손해액까지는 100%를 지급하고, 200,001에서 300,000 포린트의 경우, 손해액은 200,000 및 그 초과분의 50%를 부가한 액수를 지급하고, 300,001 포린트에서 500,000사이의 경우, 250,000 포린트 및 300,000포린트를 초과하는 손해액의 30%를 부가한 액수를 지급하고, 500,001 포린트 이상의 경우, 310,000 포린트 및 500,000 포린트를 초과하는 손해액의 10%를 부가한 액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액의 상한선에 대하여, 보상액은 소유재산별 및 원소유자별로 5,000,000 포린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공동소유재의 경우, 각자의 보상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마. 보상의 방식

(1) 보상원칙 및 보상증서에 의한 보상

헝가리의회는 제1차 보상법률에서 규정하였듯이, 체제전환에 따른 시장경제질서의 형성 및 소유권관계 확립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상태 및 투자촉진 등을

고려하여 보상법률에서 반환원칙이 아니라 보상원칙에 의한 원소유자의 보상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헝가리 의회는 국가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보상원칙을 취하면서도 금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상증서(Entschädigungsscheinen)"에 의한 보상의 방법을 채택하였다.[28] 이에 관하여, 제1차 보상법률 제5조 제1항은 "보상액은 보상증서로 지급한다. 보상권자는 …보상증서만을 발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증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보상증서라는 명칭, 액면가액과 이자증액표시란(제5조 제5항),[29] 사용방법(제7조), 발행일 및 발행지, 일련표시(제2항)와 일련번호, 국가보상관청의 서명, 보상증서의 액면가액(1,000포린트, 5,000포린트, 10,000포린트)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 보상증서에 대하여, "보상증서는 보상액에 상응하는 무기명 양도증서로서 국가에 대한 채권을 그 액면가액으로 화체한 유가증권이라고 하고(제5조 제3항), 이 보상증서는 금전채권을 화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화체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2) 보상증서의 사용용도와 그 전제조건

제1차 보상법률 제7조는 보상증서의 용도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제1항에서 "국가는 보상증서 소지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증서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여, "a) 국유재산의 사유화시 매각되는 자산, 주식, 기업지분의 매수시 그 지불수단, b) 농지의 매수시 그 지불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보상권자는 본법에 따라 자신에게 교부된 보상증서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국가 점유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무상으로 이전된 주택의 매입시에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유화되는 국가기업에 대한 지분 및 공공주택의 매수시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보상증서는 생계비 대출규정에 의한 융자시 또는 실업대출의 신청시 그 액면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

28) Petsche, Privatisierung in Ungarn: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n, ROW 3/1996, S. 71.

29) 보상증서의 액면가액은 매달 국가보상관청이 발표하는 이자율만큼 증액되고, 그 증액분은 발표 익월 초일부터 보상증서상의 이자증액표시란에 기재될 수 있다(제5조 제5항).

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융자시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종신연금은 보상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험의 범위 내에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증서…로 보상된다.”고 하여, 종신연금 지급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보상절차

(1) 보상신청 및 신청기간

보상권자는 제1차 보상법률의 효력발생 후 90일 이내 관할 수도보상관청(Hauptstädtische Amt) 또는 주보상관청(Komitatsamt)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권자의 일상적인 주소가 국외인 경우 수도보상관청이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3항). 보상권자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보상권자의 권리가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제1차 보상법률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보상법률 발효 후 90일의 기간, 즉 1991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 청구기간이 보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법률(Gesetz Nr. L/1991)을 통하여 1991년 12월 16일까지로 그 보상청구기간을 연장하였다.

(2) 관할관청

보상신청의 관할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제1차보상법은 주보상관청과 수도보상관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지방의 보상신청자는 주보상관청에 신청하고, 수도 부다페스트의 경우에는 수도보상관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상권자의 일상적인 주소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수도보상관청에 신청하거나(제11조 3항), 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보상관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또한 보상의 관할관청이 중복되는 경우에 보상권자가 선택하는 보상관청이 이를 관할한다고 하여(제11조 제4항), 보상신청권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률상의 관할에 대하여 첫 번째 심급은 수도보상관청 또는 주보상관청이고,

두 번째 심급은 국가보상관청으로서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나아가 국가보상관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장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제3항).

(3) 보상결정절차

보상관할관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제12조 제5항). 보상관청의 신청서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이며, 보상관청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제5항의 a)). 신청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보상신청권자가 보상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 또는 다른 행정절차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보상절차의 진행은 중단된다(제12조 제5항 b)).

Ⅳ. 결론: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이상의 헝가리의 체제전환에 따른 재산불법의 해결원칙은 체제전환 이후의 동구유럽 여러 국가의 재산불법에 대한 해결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비록 법치주의관점에서 정의에 가장 충실한 것은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원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원소유자의 규명에 대한 시간적 소모로 인하여 투자지연이라는 장애가 우려된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독일의 반환원칙에 의한 원소유자의 규명문제에서 증명된 것으로서, 독일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원물에 의한 반환을 고집하다가 동독지역의 투자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우선의 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복합모델이라고 일컫어지는 반환원칙과 투자를 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혼합하게 되었다.

헝가리의 보상원칙에 의한 해결모델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의에 적합할 수 있느냐하는 의문이 있을 정도로 원소유자의 권리를 국가의 경제재건이라는 목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투자를 위하여 장애되는 원소유자 규명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신청기간을 보상법률 효력발생 후 90일 또는 제2차

보상법률에서는 120일로 하는 등 체제전환 후의 낙후된 국가의 경제재건에 초점을 두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재건의 목적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문제의 해결의 기초는 헝가리와 같이 체제전환 이후의 새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결국 북한지역에서 공산주의 재산불법의 문제는 국가에 의한 사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사인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성립은 곧 통일한국에 있어서 통일의회가 이전 북한지역에서의 재산불법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또 다른 헌법적 문제를 가져온다. 국가권력에 의한 재산불법의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에 구속되는 통일의회는 그 재량이 재산권보장에 한정되고 이에 따라 보상원칙에 의한 해결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구속된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규범력에 따를 때 이와 같은 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불법단체에 의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 경우, 통일의회는 법치주의 확립 및 사인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근거하여 그 해결을 위한 법률의 형성이 요구되며, 보상방법 뿐만 아니라 보상의 범위 내지 액수 등에 대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용, 구동독의 토지제도,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9-10.

법무부, 통일독일·동구유럽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1994.

법무부, 동구제국 체제개혁 개관- 법제·사법개혁과 체제불법청산-, 1996.

김병기, 통독 재산법제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청구권, 토지공법연구 제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1999.2.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표명환, 헝가리의 공산주의 불법수용에 관한 보상법제 고찰, 현대공법이론의 제

문제(천봉 석종현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2003.

표명환,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법리, 한국헌법학회 제130회 관·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2018. 5. 31-6.1.

Brunner, Georg/Halmai, Gábor, Die juristische Bewältigung des kommunistischen Unrechts in Ungarn, in: Brunner, Georg (Hrsg.), Die juristische Bewältigung des kommunistischen Unrechts in Deutschland und Osteuropa, Berlin 1995, S. 9 ff.

Brunner, Georg/Sólyom, László,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Ungarn. Analysen und Entscheidungssammlung 1990-1993, Baden-Baden 1995.

Brunner, Gerog/Schimd, Karin/Klaus, Westen(Hrsg.), Wirtschaftsrecht der osteurpaischen Staaten, Loseblattsammlung, Baden-Baden 1991.

Halmai, Gábor, Die Restitution konfiszierten Eigentums in Ungarn, in: Tomuschat, Christian(Hrsg.), Eigentum im Umbruch: Restitution, Privatisierung und Nutzungskonflikte im Europa der Gegenwart, Berlin/Wien 1996, S. 27 ff.

Hiller, Kinga, Neue Verfassung für Ungarn?, ROW 2/1998, S. 74 ff.

Motsch, Richard, Verfassungsmäßigkeit des Entschä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es, NJW 35/1995, S. 2249.

Petsche, Alexander, Privatisierung in Ungarn: Entwicklung, Stand und Perspektiven, ROW 3/1996, S. 69 ff.

Rother, Christopher, Entwicklungsstendenzen im ungarischen Wirtschafts- und Privatisierungsrecht 1991/1992, ROW 1992, S. 201 ff.

Sárközy, Tamás, Rechtsstellung der Unternehmen in Ungarn, JOR XXVII(1986), S. 73 ff.

Takács, Imre, Das Prinzip des Parlamentarismus in der Theorie und Verfassungswirklichkeit Ungarns, in: Brunner, Georg(Hrsg.), Politischer Pluralismus und Verfassungsstaat in Deutschland und Ungarn, Südosteuropa-Studie 49, München 1991.

Vörös, Imre, Das Recht auf Eigentum in der ungarischen Verfassung, in:

Morsey, Rudolf/Quaritsch, Helmut/Siedentopf, Heinrich (Hrsg.), Staat, Politik, Verwaltung in Europa, Gedächtnisschrift für Schnur, Roman, Berlin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and the Legislation on the Resolution of Property Illegal in the Previous Communist System

Pyo, Myoung-Hwan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Hungary was one of the systemtransformation countries i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started from the disintegr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1989.

The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was not by a blood-blowing revolution, but by a full-scale constitutional revision in parliament. The revised constitution of Hungary imitated the liberal democracy constitution.

Especially, the enactment of the election law that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provided an important signal fo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cialist system.

Having completed this systemtransformation, Hungary faced on the solution of the illegal problems that had been committed in the previous system. This illegal solution is based on the revised constitution, and it has significance as an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order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Among the illegality of the previous system, the problem of property illegality originates from the identification of the former owner. In addition,

this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as to who the current owner is and who the future owner will be.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the de-nationalization of state-owned property.

In view of this, Hungary adopted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not the return to the original owner. The Hungarian Parliament enacted the 'First Compensation Act 'and the 'Second Compensation Act', which are based on this principle. This law provides for 'compensation certificates' rather than monetary compensation.

This solution of Hungar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solving the communist property illegal in North Korea which will be faced also in the unified Korea.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 the preceding studies on the principle of return by the materials that Germany adopted.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economic reconstruction through rapid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method of compensation by Hungary is more appropriate.

Key words : Systemtransformation of Hungary, Principle of Compensation, Property Illegal, Compensation Certificate, Principle of Return, Compensation Law, Unification of the Korean